



소비자사안부 라이선싱 센터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 LICENSING CENTER)  
42 Broadway, Lobby  
New York, NY 10004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00 - 오후 5:00  
수요일: 오전 8:30 - 오후 5:00

뉴욕 시 중소기업  
지원 센터  
(NYC SMALL BUSINESS  
SUPPORT CENTER)  
90-27 Sutphin Blvd, 4th Floor  
Jamaica, NY 11435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00 - 오후 5:00.

전화: 311(뉴욕 시 이외 지역의 경우  
(212-NEW-YORK)  
nyc.gov/dca | @NYCDCA

## 면허 신청 체크리스트: 담배 소매 판매상(영업장)

### 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는 누가 발급 받아야 하나요?

소비자에게 담배를 직접 판매하려면 "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뉴욕 시 내 소재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면허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제조사, 에이전트, 면허가 있는 도매 판매상, 또는 제조사, 에이전트, 또는 면허가 있는 도매 판매상 또는 소매 판매상을 대신해 정기적으로 담배를 배달하는 개인이 아닌 일체의 개인이 한 번에 보유 또는 운반하는 담배 개수가 400 개를 초과하면 해당 개인이 소매 판매상이라는 추정 증거가 됩니다.

본인이 도매 판매상이고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를 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설명은 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동봉된 "면허 발급 법/규정" 배포물을 참고하십시오.

### 신청 요건 간단 목록

- 기본 면허 신청
- 판매세 식별 번호 또는 권한 신청 확인 증명서 번호
- 뉴욕 주 세무 및 재무국(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판매를 위한 소매상 및 자동 판매기 등록증
- 사업장 주소 증빙 서류
- 자택 주소 증빙 서류
- 위임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 면허 발급 수수료(4 페이지 참조)

자세한 설명은 "신청 요건"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기타 필요할 수 있는 시 또는 주 당국 허가/면허/승인

본인이 담배 도매 판매상인 경우 뉴욕 시 재무국(Department of Finance, DOF)에서 도매상 면허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절차



[www.nyc.gov/BusinessToolbox](http://www.nyc.gov/BusinessToolbox) 를 방문해 뉴욕 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십시오. **참고:** 현재 이 서비스는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또는



아래 장소 중 한 군데에서 직접 제출하십시오:

- DCA 의 Licensing Center(라이선싱 센터) 로비, 42 Broadway, Manhattan. 운영 시간은 월, 화, 목, 금요일은 오전 9 시~오후 5 시, 수요일은 오전 8 시 30 분~오후 5 시입니다.
- NYC Small Business Support Center(뉴욕 시 중소기업 지원 센터) 90-27 Sutphin Blvd, 4th Floor, Jamaica, Queens. 운영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5 시까지입니다.

### 번역 서비스

영어를 말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우신 경우, 센터에 도착하셔서 알려주시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합당한 편의 시설

장애 관련 편의 시설을 요청하시려면 "장애인 편의 시설 요청 양식(Accommodation Request For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동봉)을 작성해 제출해 주십시오. (212) 436-0155 번으로 DCA 의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담당자에게 전화해 양식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 신청 요건

### DCA 면허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다음 필수 제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DCA 가 직접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이러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뉴욕 시 행정법(New York City Administrative Code) 제 20-104 조에 따라 해당 서류를 요청 및 검토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사업체의 법적 구조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자 증명서.
  - 본인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반드시 해당 사업장 소재지 카운티 서기에게 사업체/가칭 증명서(Business/Assumed Name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합니다.

- (상호나 DBA[회사명]이 아닌)본인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Sole Proprietorship)의 경우 사업체 증명서(Business Certificate)가 필요 없습니다.
- 합명회사/동업회사(General/Business Partnership)의 경우 반드시 해당 사업체의 사업장 소재 카운티 서기에게 동업 증명서(Partnership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Corporation), 유한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유한책임합자회사(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등은 반드시 뉴욕 주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OS)에 등록하고 계속 활동을 해야 합니다. DCA 는 면허 발급 전에 활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업체의 활동 상태는 [http://www.dos.ny.gov/corps/bus\\_entity\\_search.html](http://www.dos.ny.gov/corps/bus_entity_search.html)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사업체에 대해 가칭 증명서(Assumed Name Certificate)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뉴욕 주 이외 지역에서 설립된 업체의 경우 반드시 설립된 주의 국무부 장관으로부터 우량 사업체 증명서(Certificate of Doing Business in Good Standing)를 발급 받아, 뉴욕 주 내 사업 수행 권한(Authority to Conduct Business in New York) 신청서와 같이 뉴욕 주 국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DCA 면허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은 면허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적용되는 요건들입니다.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기각됩니다.

- **기본 면허 신청(첨부).**  
기억해 둘 사항: 본인 사업체의 법적 구조가 자영업, 또는 합명회사 또는 유한합자회사인 경우 반드시 신청서의 자녀 양육 증명(Child Support Certification) 섹션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 **판매세 식별 번호 또는 권한 신청 확인 증명서 번호.**  
판매세 식별 번호는 뉴욕 주 세무 및 재무국 권한 증명서(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Certificate of Authority)에 나와 있는 9, 10 또는 11 자리 숫자입니다. 이 번호를 반드시 기본 면허 신청서(Basic License Application) 양식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권한 증명서(Certificate of Authority)를 아직 받지 못하신 경우, 권한 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받으셨던 6 자리 확인 번호를 기재하십시오.

권한 증명서를 신청하려면 뉴욕 주 License Center(<https://licensecenter.ny.gov>)를 방문하십시오. 신청서 양식을 이용하려면 NY.gov ID 가 필요합니다. 서면 신청서를 요청하려면 (518) 485-2889 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권한 증명서는 뉴욕 주 세무 및 재무국(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신청하신 후 받으실 때까지 약 4 주 내지 6 주가 소요됩니다.

- **뉴욕 주 세무 및 재무국(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판매를 위한 소매상 및 자동 판매기 등록증.** 현재 소지하고 계신 뉴욕 주 세무 및 재무국(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판매를 위한 소매상 및 자동판매기 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명, 사용 중인 회사명 (Doing-Business-As name, DBA 가 있는 경우), 사업장 주소 등은 모든 서류에 동일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판매를 위한 소매상 및 자동판매기 등록 신청서를 원하시면, 온라인으로 뉴욕 주 세무 및 재무국 웹사이트 [www.licensecenter.ny.gov](http://www.licensecenter.ny.gov) 를 방문하시거나 (518) 457-5735 로 전화해 주십시오. 참고: 소매상은 담배를 판매 중인 상점이 있는 지역마다 따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은 매년 갱신하셔야 합니다.
- **사업장 주소 증빙 서류.**  
사업장 주소에 대한 증빙으로 다음 서류 중 1 가지 사본 1 부를 제출하십시오.

  - 최근 90 일 이내 날짜 공공요금 청구서(전화, 가스, 전기, 케이블 또는 수도 요금), 또는
  - 면허 신청서 상에 올라 있는 사업체 또는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현재 유효한 임대 또는 소유권 증서, 또는
  - 현재 유효한 집세 또는 부동산 대출 청구서, 또는
  - 뉴욕 주 또는 다른 뉴욕 시 당국 기관이 발행한 현재 (유효한) 면허 또는 허가증으로 사업체 주소가 나와 있는 서류.
- **자택 주소 증빙 서류.**  
면허 신청서 상에 이름이 올라 있는 각 개인은 반드시 본인의 자택 주소 증빙으로 다음 서류 중 1 가지 사본 1 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90 일 이내 날짜 공공요금 청구서(전화, 가스, 전기, 케이블 또는 수도 요금), 또는
  - 현재 유효한 임대 또는 소유권 증서, 또는
  - 현재 유효한 집세 또는 부동산 대출 청구서, 또는
  - 운전면허증
  - 시 ID 카드

*다른 사람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제출 서류:*

  - 해당 개인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임차 명의자가 서명한 서한, 그리고
  - 해당 임차 명의자의 이름이 나와 있는 (상기) 자택 주소 증빙 1 종.
- **위임 확인서(첨부).**  
이 신청서를 면허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면허 신청인은 반드시 위임 확인서(Granting Authority to Act Affirmation)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신청인은 반드시 모든 필수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 **면허 발급 수수료.**  
5 페이지의 도표에 면허 신청 제출 시점에 따른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참고:** 홀수년도는 홀수로 끝나는 모든 연도를 말합니다(예: 2017 년). 짝수년도는 짝수로 끝나는 모든 연도를 말합니다(예: 2018 년).

담배 소매 판매상 면허 발급 수수료			
면허 기간	면허 만료일	신청서 제출 날짜:	면허 발급 수수료:
2년	12월 31일 짝수년도	홀수년도 1월 1일부터 홀수년도 6월 30일까지	\$110
		홀수년도 7월 1일부터 홀수년도 12월 31일까지	\$85
2년	12월 31일 홀수년도	짝수년도 1월 1일부터 짝수년도 6월 30일까지	\$110
		짝수년도 7월 1일부터 짝수년도 12월 31일까지	\$85

### 수수료 납부

DCA 라이선싱 센터와 뉴욕 시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신용카드(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스커버 카드)나 뉴욕 시 소비자 사안부(NYC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앞으로 발행된 수표나 우편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반드시 주요 카드사 신용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참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환불되지 않는 편의 수수료 2.49%가 부과됩니다. 해당 결제가 취소되거나 환불, 크레딧 처리 또는 신용 거절되는 경우 편의 수수료 분쟁 문제는 해당 카드사와 해결하셔야 합니다.

### 담배 소매 판매상을 위한 추가 자료

본 패킷에는 담배 소매 판매상들의 법과 의무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법/규정 배포물(담배 소매 판매상)**

주의사항:

- 법에 의거, 담배 소매상은 나이제한 표지(Age Restriction) 및 뉴욕 시/뉴욕 주 납세필 인지(Tax Stamp) 표지를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DCA 가 이들 표지 사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표지 사본 및 법률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내용은 [www.nyc.gov/BusinessToolbox](http://www.nyc.gov/BusinessToolbox)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배 소매상은 K2(“스파이스(spice)”), 배스솔트(bath salt) 혹은 이와 기능적으로 유사한 물질을 제조, 유통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연방법, 뉴욕 주법, 뉴욕 시 법에 의거해, 이러한 물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판매 시 금고형, 상당한 벌금형을 받거나 담배 소매상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 법률을 최초로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면허가 30일간 정지됩니다.
  - 이를 두 번째로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 **검사 체크리스트**

DCA 검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알고 위반을 방지하려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십시오.

- 검사 체크리스트: 담배 소매 판매상
- 검사 체크리스트: 가향 담배

- **뉴욕 주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 자료**

뉴욕 주의 인증 담배 판매 교육 프로그램(Certified Tobacco Sales Training Programs), 담배 자판기, 미성년자 판매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https://www.health.ny.gov/prevention/tobacco\\_control/](https://www.health.ny.gov/prevention/tobacco_control/)을 방문하시거나 (800) 458-1158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